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 13., 이주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 1. 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8.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주영 의원)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

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최근 저체중 출생아 및 조산아 통계를 살펴보면 그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미숙아등에 대한 통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숙아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지속관리·지원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의 효과적 시행 및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면서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미숙아등 통계관리’로 약칭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1조의6에서는 난임시술 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을 “통계관리”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두 조문에서의 통계관리가 다른 성격의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미숙아등과 부모에게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아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법률에서 그 세부적인 정보의 내용을 각 호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미애)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대상을 각 호로 명확하게 열거하고,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통계청을 추가하며,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없 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도록 수정하고, 현행법 제11조의6에서 규정하는 난임시술 현황 등에 대한 통계관리를 ‘난임 통계관리’로 자구 수정하여 미숙아등 통계관리와 구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통계청을 추가하고,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및 안 제11조의6제1항 등).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3의 제목 중 “통계관리 등”을 “통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숙아등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통계청, 미숙아등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1. 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미숙아등 출생 관련 임신, 분만, 신생아 정보
3. 신생아기 질환·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
4. 미숙아등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
5. 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6의 제목 및 제1항 중 “통계관리”를 각각 “난임 통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난임시술의”를 “난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통계관리”를 각각 “난임 통계관리”로 한다.

안 제21조제1항제3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통계관리업무”를 “난임 통계관리 업무”로 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제9조의3(미숙아등의 <u>통계관리 등</u>)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u> <u>미숙아등의 건강관</u> <u>리 및 치료를 지원</u> <u>하기 위하여 미숙</u> <u>아등의 출생 현황,</u> <u>성장 및 치료 과정</u> <u>등에 대한 통계 및</u> <u>정보 등의 자료를</u> <u>수집·분석하고 관</u> <u>리(이하 “미숙아등</u> <u>통계관리”라 한다)</u> <u>하여야 한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9조의3(미숙아등의 <u>통계관리</u>) ① ---- ----- ----- ----- ----- <u>다음 각 호</u> ----- ----- ----- ----- ----- ----- 1. <u>미숙아등과 부모</u> <u>의 인구통계학적</u> <u>특성</u> 2. <u>미숙아등 출생</u> <u>관련 임신, 분만,</u> <u>신생아 정보</u> 3. <u>신생아기 질환·</u> <u>장애 등 성장 발</u>

	<u><신 설></u> <u><신 설></u> ② <u>보건복지부장관</u> <u>은 미숙아등 통계</u> <u>관리를 보건복지부</u> <u>령으로 정하는 기</u> <u>관에 위탁·운영할</u> <u>수 있다. <후단 신</u> <u>설></u> ③ <u>보건복지부장관</u> <u>은 미숙아등 통계</u> <u>관리에 필요한 경</u> <u>우 미숙아등을 진</u> <u>단·치료하는 의료</u> <u>인 또는 의료기관,</u> <u>「국 민 건 강 보 험</u>	<u>달 정보</u> 4. <u>미숙아등 출생에</u> <u>지출된 의료비 정</u> <u>보</u> 5. <u>그 밖에 미숙아</u> <u>등 통계관리에 필</u> <u>요한 자료로서 보</u> <u>건 복지 부 령 으 로</u> <u>정하는 사항</u> ② ----- ----- ----- ----- ----- -----,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 ----- ----- -통계청, 미숙아등 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
--	--	---

	<u>법」에 따른 국민</u> <u>건강보험공단 및</u> <u>건강보험심사평가</u> <u>원, 그 밖에 미숙아</u> <u>등에 관한 사업을</u> <u>하는 법인·기관·</u> <u>단체 등에 자료를</u> <u>요청할 수 있다. 이</u> <u>경우 자료요청을</u> <u>받은 자는 특별한</u> <u>사유가 없으면 요</u> <u>구에 따라야 한다.</u> ④ <u>미숙아등 통계</u> <u>관리의 내용·방법</u> <u>및 제2항에 따른</u> <u>위탁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보건복지부</u> <u>령으로 정한다.</u>	----- ----- ----- ----- -----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의6(<u>통계 관리</u>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 생식술 등 난임시 술현황 및 그에 따 른 임신·출산 등에	제11조의6(<u>통계 관리</u> 등)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u>난임 통계</u> <u>관리</u> 등) ① ----- ----- ----- ----- ----- -----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관리(이
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난임시
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은 통계관리를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은 통계관리에 필
요한 경우 난임환
자를 진단·치료하는

-----난임 통계
관리-----

-----.
② -----

-----.

1. ~ 6. (현행과 같
음)

7. -----난임-----

③ -----
---난임 통계관리---

-----.

④ -----
---난임 통계관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미숙아등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u>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	---	---

4. ~ 8. (생략) 9. 제11조의6제3항 에 따라 <u>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u> ② (생략)	<u>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u> 4. ~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부칙</u> <u>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4. ~ 8. (개정안과 같음) 9. ----- -----<u>난임 통계 관리 업무</u>----- ----- ----- ② (개정안과 같음) <u>부칙</u> -----<u>2년</u> ----- -----.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고, 이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미숙아등의 통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미숙아등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미숙아등의 출생 관련 임신·분만 및 신생아 정보
3. 신생아기 질환·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
4. 미숙아등의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
5. 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통계청, 미숙아등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6의 제목 및 제1항 중 “통계관리”를 각각 “난임 통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난임시술의”를 “난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통계관리”를 각각 “난임 통계관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통계관리업무”를 “난임 통계관리 업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 · 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 · <u>관리</u>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 · 관리) ----- ----- ----- -----관리 하고, 이를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미숙아등의 통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 분석하고 관리(이하 “미숙아등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미숙아등의 출생 관련 임신

· 분만 및 신생아 정보

3. 신생아기 질환·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

4. 미숙아등의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

5. 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통계청, 미숙아등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 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

④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 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①

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난임 통계관리-----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난임-----

③ -----난임 통계관리-----

-----.

④ -----난임 통계관리-----

-----.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u>통계관리업무</u>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생략)	----- -----. 1. ~ 8. (현행과 같음) 9. -----<u>난임</u> <u>통계관리 업무</u>----- ----- ② (현행과 같음)
---	--